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2748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섭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2022. 4.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 6. 13. 접수 제202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A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1458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1. ‘E은 F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0,109,316원, 원고 B, C에게 각 65,054,6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E의 부친인 망 G는 2022. 4. 10. 사망하였다. E은 2022. 5. 17. 인천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22. 5. 30.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22.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은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중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모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E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E의 상속포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E은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피고가 법무사에 알아본 결과 E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것이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등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참조), 이는 E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법원과 통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별지